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2년 1월 15일(토) 오픈될 예정입니다.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 [2022. 1. 21.(금) ~ 2022. 1. 26.(수)]

- **PDF파일 다운로드 후 나이스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진행 후 나이스 출력물, PDF 파일 출력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PDF파일은 메신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2년 5월중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파일 업로드 방법**

1.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u>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u>

   →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❶ 전체월선택을 선택하면 ❷ 전체월해제가 조회되며 <u>근무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u>에는 제외월을 선택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 확인 및 안경구매정보 등록하기

❶ 의료비를 클릭하여 ❷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확인, 안경구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❸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자료가 조회되며 ❹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등록 됨

3. 입력방법: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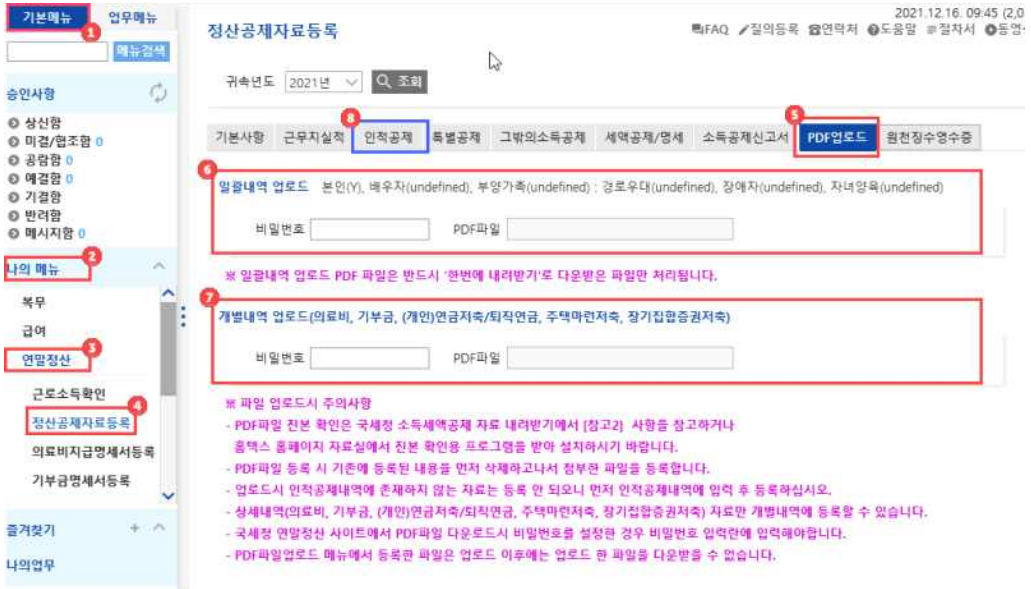

* 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공제자료를 업로드 하는 메뉴로 ❺PDF업로드에서 ❻일괄내역이나 ❼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 파일 업로드 시 ❽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자가 인적공제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에 직접등록 가능)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일괄내역 업로드에 기본(지출처별)내역 전자문서 17종은 건별로 업로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란에 입력**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 가능)

● **서류 제출 시 팩스 및 복사본은 안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제출자(근로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p.4~10를 참고하여 공제 충족 요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단,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중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다운로드 출력시 월별 상세내역으로 출력
(예시 : 2021. 3. 1. 신규임용자는 3월~12월까지 월별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출력)

⑤ 국세청에서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 자료 제출 시, 의사 및 약사의 도장과 환자 인적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예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⑥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기일내 제출치 못하시는 교직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말일 (2022.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기일내 미제출시에는 기본사항으로만 연말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국번없이 126 ->내선 1 -> 5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 -> 내선 5 -> 2번

< NEIS 입력사항 >

1. 입력방법 : 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저장 - 출력)
   ○ 첫 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번째줄(그밖의 자료)
   ○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이용)

2. **의료비공제제도** : 공제의료비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의 의료비는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저장 - 출력)
   (수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필히 두 번씩 확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3. **기부금공제제도** : 공제기부금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저장 - 출력)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418-82-64064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교원단체총연합회	402-82-13726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해당고유번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라북도교육청	116-82-14692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	116-83-00138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4. **연금저축공제등록**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내역 건별로 입력
   (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 저장 - 출력)

5. **월세명세서등록** : 월세공제 직접 입력
   (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저장 - 출력)

※ 1번~5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 되오니 수기발급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료들은 별도로 입력

※ 부정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지연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대상	방 법
①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 >귀속년도(2021년)>조회>출력물 **서명** 후 제출
②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전교직원	☞ 민원24: http://www.minwon.go.kr
③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 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④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 >조회>등록 및 출력>출력물 **서명**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⑤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 >조회>등록 및 출력>출력물 **서명**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⑥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1년) >조회>등록 및 출력>출력물 **서명**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 >조회>등록 및 출력>출력물 **서명**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⑦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전교직원 (PDF파일 출력물 제출)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1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 파일 출력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⑧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	☞ 6, 7페이지 참조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 후 서명 꼭 해주세요.

증 빙 서 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제공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등본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 군,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면 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군, 구청	
인적공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 면, 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택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	
			주민등록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또는 본인 보관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또는 본인 보관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
연금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작성(서명 필요)	
	의료기관, 병원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

교육비	수업료,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국외 교육기관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서명 필요)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지방자치단체	
월세액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서명 필요)	
		주민등록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2021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table>
<tr><th>항목</th><th>구 분</th><th>공제 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2">인적공제</td><td>기본공제</td><td>1명당
150만원</td><td>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table><tr><th>부양가족</th><th>직계존속</th><th>직계비속(동거입양자)</th><th>형제자매</th><th>위탁아동</th><th>수급자</th></tr><tr><td>나이요건</td><td>60세 이상
(1961.12.31.이전 출생)</td><td>20세 이하
(2001.1.1.이후 출생)</td><td>60세 이상
20세 이하</td><td>18세 미만
(2003.1.2.이후)</td><td>없음</td></tr></table>*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소득에 종류: 종합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td></tr>
<tr><td>추가공제</td><td>대상별
차이</td><td><table><tr><th>공제대상</th><th>경로우대(70세 이상) (1951.12.31. 전출생))</th><th>장애인</th><th>부녀자(여성) (기혼○/미혼△)</th><th>한부모(남.여) (배우자×,기본공제대상○)</th></tr><tr><td>공제금액</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50만원
(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능)</td><td>100만원</td></tr></table>*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td></tr>
<tr><td>연금보험료</td><td>공적연금보험료</td><td>전 액</td><td>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td></tr>
<tr><td rowspan="4">특별소득공제</td><td>건강.고용보험료</td><td>전 액</td><td>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td></tr>
<tr><td>주택마련 저축</td><td>연 300만원 한도</td><td>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td></tr>
<tr><td>주택자금</td><td>주택임차 차입금</td><td>연 300만원 ~1,800만 원 한도</td><td>12. 31.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td></tr>
<tr><td>장기주택 저당차입금</td><td>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황액 공제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table><tr><th>차입시기</th><th>공제 한도</th></tr><tr><td>'15. 1. 1. 이후</td><td>.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td></tr><tr><td>2012.1.1. 이후</td><td>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그 외(500만 원)</td></tr><tr><td>2012.1.1. 이전</td><td>상환기간 15년이상 30년 미만(1,000만 원), 30년 이상 (1,500만 원)</td></tr></table></td></tr>
<tr><td>기부금(이월분</td><td>한도 내 이월액</td><td>20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이월액 (기간 10년)</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조특법상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7천이하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 20%** 7천초과1억2천이하 **250만원** 1억2천초과 **200만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40%를**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각각 40% ⑤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증가액: 10%
세액공제	자녀 - 기본공제대상 7세이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2인 초과 1인당 30만원**
	자녀 - 출산·입양	전 액	2021년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12% 혹은 15%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1억원 이하 (1.2억원) / 12%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보험료 - 보장성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연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납입액연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 ①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등	한도없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시력보정용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출산1회당 200만원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의료비 - ②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700만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300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300만 원** 한도
	교육비 - 초중고생		등록금, 입학급,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1인 5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체험학습비(1인 30만원) **300만 원** 한도
	교육비 - 대학생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900만원	등록금, 입학금 **900만 원 한도**
	교육비 -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수강지원금 제외)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기부금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중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기부금 - 정치자금 10만 원 초과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중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세액공제
	기부금 - 법정	근로소득금액·100%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지출한 기부금(우리사주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을 계산한 후 **1천만 원 이하분 20%, 1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기부금 -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기부금 -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기부금 -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월세액	10% 또는 12%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은 경우 세대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첨부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증)